

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9년 9월 3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김정수)

□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442호, 2009. 2. 6. 공포·시행)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”를 “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9조에 따라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징과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공동구”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에서”를 ““공동구”란 법 제2조제9호에서”로 한다

제3조 중 “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납입고지서에 의하여”를 “납입고지서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다”를 따른다”로 한다.

②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.

2.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말까지 징수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8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442호, 2009. 2. 6. 공포·시행)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”를 “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9조에 따라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징과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공동구”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에서”를 ““공동구”란 법 제2조제9호에서”로 한다

제3조 중 “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납입고지서에 의하여”를 “납입고지서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다”를 따른다”로 한다.

②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.
2.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말까지 징수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제3항 및 제4항, 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징과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9조에 따라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징과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동구”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-----“공동구”란 법 제2조제9호----- -----.</p>
<p>제3조(부천시공동구관리협회의 설치) 시장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동구관리협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부천시공동구관리협회의 설치) ----- 제39조제2항에 따라----- -----.</p>
<p>제4조(점용료 산정기준) 점용료는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.</p>	<p>제4조(점용료 산정기준) ----- 「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----- 따라 ----.</p>
<p>제5조(관리) ① (생략) ②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천시공동구관리협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, 이를 공동구 최초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<u>년2회</u> 분할하여 납부한다.</p>	<p>제5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연 2회 -----.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징수) ①공동구의 설치비용, 점용료 그리고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교부하는 <u>납입고지서에 의하여</u> 징수한다.</p> <p>②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</p> <p>1.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시에 전액을 징수한다.</p> <p>2.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허가시에 그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말까지 징수한다.</p> <p>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<u>의한다</u>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한다</u>.</p>	<p>제6조(징수) ① ----- ----- -----<u>납입고지서에 따라</u>-----.</p> <p>②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.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.</p> <p>2.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말까지 징수한다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</u>.</p>